

第115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第2號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1年10月16日(火) 11時00分

議事日程(第2次本會議)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2.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3.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
4.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

附議된案件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3.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計劃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 1面
4.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鐘路區廳長 提出) ..... 1面

(11時00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를 보고받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人事管理  
 條例中改正條例(案)(鐘路區廳長 提出)
2.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  
 (案)(鐘路區廳長 提出)
3.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產管理計  
 劃變更計劃(案)(鐘路區廳長 提出)
4. 都市計劃(案) 變更決定 意見聽取의 件(鐘路  
 區廳長 提出)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종로  
 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  
 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서울특  
 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의사일

정 제4항 도시계획(안)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市民行政委員會 李憲九 委員長!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市民行政委員長 李憲九 市民行政委員會 委員長  
 李憲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  
 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金以煥 議長  
 님! 金正大 副議長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과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  
 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가 심  
 사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 공무원 인사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가 폐  
 지되고 시행 중에 있으므로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이들  
 에 대한 인사권과 복무지휘권을 구청장에게로 조례상  
 일치되도록 정비하고 방법원들이 대부분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에 맞도록 직명을 "지도원"  
 으로 개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  
 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지방방법원 경찰

서 파견조항을 삭제하고 별표 1에서 지방방법원을 지방지도원으로 직명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 먼저, 배경설명에 대해 말씀드리면 '96년 4월 15일 당시 내무부에서 지방방법원의 경찰서 파견근무제 폐지 및 지방방법원 직명을 지방지도원으로 개칭하고 근무상한연령을 58세로 상향조정하면서 신규충원없이 자동감원제 실시 채택 등을 골자로 하는 방법원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었으며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는 이중 근무상한연령 상한 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를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민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원을 경찰서나 파출소에 파견하게 되면 파견된 방법원의 복무지휘권은 경찰서 또는 파출소장에게 있으므로 임용권자인 구청장은 인건비만 부담하면서 인사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재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제도는 당시 내무부의 표준안 시달시에 사실상 폐지되었으므로 방법원의 경찰서 파견조항 삭제는 우리 구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며 방법원의 직명 변경은 현재 방법원의 종사업무가 대부분이 주차단속 및 전용차로 단속 등 주민들의 질서유지 함양을 위한 단속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나 직명이 방법원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이들을 방법 순찰하는 공무원으로 잘못 인식할 소지가 있으며 심지어 일부 공무원 중에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들이 종사하는 업무와 직명이 일치되도록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地方雇傭職公務員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보고서

(市民行政委員會)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李憲九 市民行政委員長!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建設委員長 安載弘 財務建設委員會委員長 安載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議長님과副議長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盧張鐸 副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석으로 제법 한기까지 느끼게 하는 이때에 이 자리를 함께 한 모든 분들에게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요사항이 2개 사항으로 1개 사항은 상위법 개정으로 시조례에 정하던 사항을 구조례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른 사항이며 또 1개 사항은 행정정보자료의 복사수수료에 있어서 그 규격이 A2(신문지 1/2 크기) 이상의 사본은 실제비용이 A2는 800원, A1은 2,000원 상당이 소요됨에도 수수료 규정에서는 모두 300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범인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이 2001년 5월 24일 개정되면서 시조례로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던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게임·설비제공업 등에 대한 수수료를 구조례에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수수료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의 종별 내용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2만원으로 게임·설비제공업 및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수수료는 3만원으로 하고 위 사항의 변경신고시에도 본 수수료의 50%정도를 납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심사결과 행정정보 복사수수료 A2 이상의 규격에 대한 복사수수료 현실화 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새로이 수수료를 규정하는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수수료 개정안은 개정안 중 별표 2의 9항 나호의 게임·설비제공업 규정은 금번 법개정으로 청소년 게임장

업과 일반게임장업으로 세분화되면서 이중 일반게임장업만 구조레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므로 게임·설비제공업을 일반게임장업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혜화동 소재 구민생활관은 '98년 1월 7일부터 우리구가 위탁 운영해오면서 연간 4~5억 정도의 재정수익을 도모하고 있는 공공시설입니다. 최근 구민생활관과 접한 혜화동 1번지 23호 면적 171.2평방미터인 개인소유의 임야를 형질 변경하여 개발코자하고 있어 이 경우 구민생활관의 공공성과 쾌적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은 물론 다소간의 민원 발생소지도 있어서 이 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안입니다. 심사결과 동 부지는 구민생활관 울타리권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12미터 도로인 우암로와는 약 4~5미터의 단층이 이루어져 있으나 지하 구조물로 건축물 바닥부분을 도로면과 일치시킬 경우 활용 가능한 토지이며 실제 토지소유자가 지하 2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 시설 및 다세대주택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렇게 건축물이 진행될 경우 구민생활관 기능유지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되었고 집행예산은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여 기존 예산의 수정이 불필요한 점등을 고려, 원안 의결하자는 안과 대상부지가 삼각형 형태로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토지로 사료되고 개발되더라도 구민생활관 기능유지에 크게 저해되지 않을 뿐더러 구민생활관이 시 소유이므로 구비로 부지 매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소수의 의견이 있었으나 정회 후에 현장확인 등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계획(안)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청국유림관리사무소 건립을 위하여 도시계획 공공청사부지로 지정한 삼청동 산 2번지 16호 지구내의 삼청동 158번지 29호 면적 248.8평방미터를 제외코자 하는 변경결정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삼청동 산2번지 16호 일대 공공청사부지는 '40년 3월 12일 조선총독

부고시 제208호로 삼청근린공원으로 결정된 후 '82년 4월 29일 서울시고시 제176호로 삼청근린공원에서 와룡근린공원으로 되었다가 또다시 '91년 5월 27일 서울시고시 제149호로 공공청사 용도로 결정된 곳으로서 지금은 산림청 산하 서울국유림관리소가 운영하고 있는 부지입니다. 해제대상 부지는 일단의 공용청사 대상 부지와는 지형적으로 단층화되어 있어서 분리된 상태여서 해제민원이 계속되어 산림청이나 서울시 도시계획 부서에서도 해제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해제 후에도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계획이므로 주변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가 제출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서울特別市鐘路區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심사보고서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邊境計劃(案) 심사보고서  
都市計劃(案) 邊境決定 意見聽取의 件 결과보고서

(財務建設委員會)

(以上 3件 附錄에 실음)

○議長 金以煥 安載弘 財務建設委員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議員!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議員!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

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市民行政委員長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종로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財務建設委員長이 보고한 (안)대로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財務建設委員長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안) 변경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財務建設委員長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15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時20分 閉會)

○出席議員 18人

- 金以煥 鄭泰淳 李憲九 吳錦南
- 千相旭 玄壽漢 安載弘 丁炳煥
- 劉燦鍾 李炯述 洪承台 金福同
-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李東奎
-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 副 區 廳 長 盧張鐸
-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 財 務 局 長 董連浩

-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 保 健 所 長 李星世